

6

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[코로나 피해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]

-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할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원에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어촌정착 의욕 고취

1 지원개요

- 접수기간 : 2021. 9. 9.(목) ~ 10. 8.(금)
- 지원금액 : 30만원(현금 계좌 입금)
- 지급기간 : 2021. 11월 중(선정 확정 시)
- 신청장소 : 해당 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 방문 신청

2 세부 추진계획

- 지원대상 : 소규모어가 한시경영바우처 지원 사업* 제외 어가
 - 대상지역 :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거주 어가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⇒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

- (1) 제주특별자치도 고시(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)에 따라 지정된 '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에 제외'된 동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
- (2) 동 지역에 거주하나 상·공업 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

- 사업량 : 약 400어가
- 지원금액 : 어가 당 약 30만원
- 신청자격 :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
(단, 가구원내 어업경영인으로써 각각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우 각각 지원금 수령 가능)

<자격조건>

-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『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』 제3조제 1호가목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,
 - 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 -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- ※ 기준 : '20.5.1 ~ '21. 4. 30
- *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어업면허·허가 기간이 유효한 자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(저소득층도민상생지원금, 아동희망지원금 제외) 신청한 경우
-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농·어업 직불금을 받은 자
- 2021년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를 받은 자
-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
 - * 단, 직장가입자 중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직과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중 평균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신청 가능
- 어가의 가구원이 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최상위 등급 적용자
- 어가의 가구원이 전년도 종합부동산과세표준이 최상위 및 다음 등급 적용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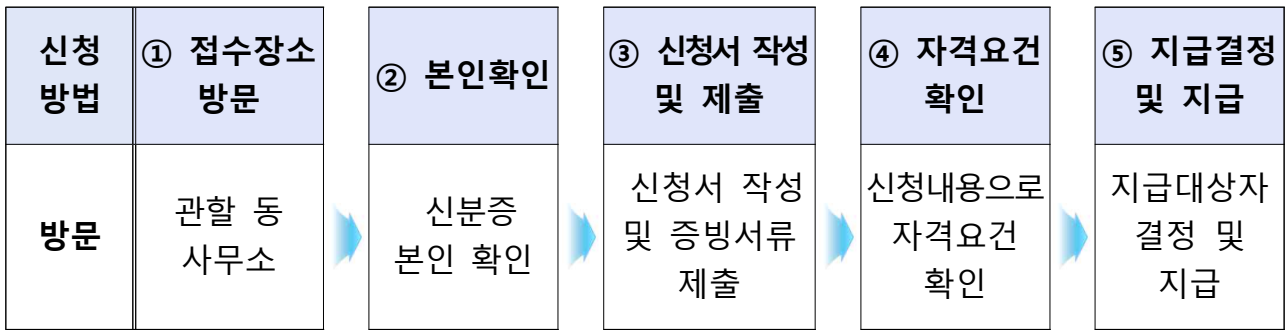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 : 해당 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 방문신청

구 분	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신청인	본인 방문 신청 원칙(어촌계 일괄 신청 가능*)
접수기간	'21. 9. 9.(목) ~ 10. 8.(금) 18:00까지 제출
접수장소	거주지 인근 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 방문 신청
지급시기	2021. 11월 중(선정 확정 시)

○ (제출서류)

-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
-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(수협 위판실적 또는 어촌계 구매확인서 등) 또는 연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실적 (입출항 신고서 등)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서류(연간 기준 : '20.5.1 ~ '21. 4. 30)
- * 어촌계 일괄 신청 시 서류 : 별지 3 위임장 첨부

□ 지급절차



- (자격확인) 대상지역 여부 등 신청인 적격 여부 확인 (동)
 - * 접수 담당자 : 동 담당자
- (신청확인) 신청서 및 지급대상 확인결과 제출(동→행정시)
- (대상자선정)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(행정시→도)
- (대상자 확정 및 지급결정) 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(도→대상자)

□ 기관별 역할

- (도 수산정책과)
 -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공고
 - 대상자 확정 및 지급
- (행정시, 동)
 -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: 신청인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확인(동)
 - 신청자 자격요건 재확인 및 대상자 선정(행정시)
 - 방문신청 기간 지원대상자 현장 접수 및 장소 제공(동)

3 문의처

- 문의처: 도 수산정책과 ☎ 710-3215
 - 행정시 해양수산과 (제주시) ☎ 728-3367
 - (서귀포시)☎ 760-2743

○ 접수처별 문의처 : 해당 동사무소

접 수 처(19개동)		문의처(☎)	접 수 처(12개동)		문의처(☎)
제 주 시 064-728	노형동	8253	서귀포시 064-760	송 산 동	4511
	아라동	8203		정 방 동	4536
	용담1동	4604		중 앙 동	4574
	용담2동	4614		천 지 동	4601
	건입동	4668		효 돈 동	4633
	화북동	8168		영 천 동	4662
	삼양동	8174		동 흥 동	4695
	외도동	8311		서 흥 동	4726
	이호동	4927		대 룡 동	4767
	도두동	4965		대 천 동	4793
	이도1동	4476		중 문 동	4838
	이도2동	8056		예 래 동	4852
	일도1동	4419			
	일도2동	8026			
	삼도1동	4536			
	삼도2동	4567			
	연동	8237			
	오라동	4812			
	봉개동	4742			

- 붙임 : 1. 지원신청서
 2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3. 통합위임장

제출 서류 * 신분증 지참

신청인 제출서류	※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1.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2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: 거래명세서, 어촌계 사(私)매매 장부, 구매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 3.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: 어촌계 조업일지,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4..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: 행사계약서 등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2.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3. 어업허가·면허·신고 정보, 수산물 위판 정보 및 어선 입항·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4.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5.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이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	년	월	일
동 의 자(경영주)			(서명 또는 인)
(가구원)			(서명 또는 인)
(가구원)			(서명 또는 인)
(가구원)			(서명 또는 인)

[]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

①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

「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」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 및 이용 목적	수 집 항 목	보유 및 이용기간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업무	○ 본인 : 성명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통장계좌번호, 통장사본 등 ○ 대리인 :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위임자와의관계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? (동의 미동의)

2. 고유식별정보 동의

수집 및 이용 목적	수 집 항 목	보유 및 이용기간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에 따른 주소 조회	○ 본인 : 주민등록번호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※ 기타 고지 :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? (동의 미동의)

② 부정수급·중복수혜 금지

- 아래 확약인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.
- 아래 확약인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, 증빙서류,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법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- 만약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법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? (동의 미동의)

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.

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.

2021년 월 일

동의 및 확인자 (인, 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통합 위임장 ※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, 각 위임자마다 작성

1. 위임하는자(위임자) 정보

성명(대표자)		어촌계명	
생년월일		주소	
어업경영체등록번호		휴대폰번호(전화번호)	
위임 사유 * 해당하는 사유에 "√" 표시	<input type="checkbox"/> 어촌계 일괄 신청 등(사유: _____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성년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명의 계좌 수령(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사유 : _____)		

2. 위임받는자(수임자) 정보

성명		위임자와의 관계	
생년월일		휴대폰 번호(전화번호)	- -
주소			

3. 위임내용

'코로나 피해 취약어가 한시 경영 안정지원금'을 진행함에 있어,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1년 ____월 ____일

위임하는자(위임자) : _____ (인, 서명)

개인정보이용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수집 및 이용 목적	수집 항목	보유 및 이용기간
코로나 피해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관련 업무	○ 본인 : 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, 주소, 어업경영체등록번호, 어촌계명, 통장계좌번호 등 ○ 대리인 : 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, 주소, 위임자와의관계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2021년 ____월 ____일

위임받는자(수임자) : _____ (인, 서명)

※ 이해 당사자(공동대표자, 미성년자,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)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,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**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**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